#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14

발의연월일: 2020. 8. 31.

발 의 자: 박완주・박성준・김민철

양정숙 • 이병훈 • 이상직

송재호 · 이형석 · 홍성국

송갑석 · 최기상 · 오영환

남인순 • 박영순 • 황운하

이수진비 · 이워택 · 전혜숙

김승원 의원(19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사고발생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대국민 항공서비스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, 매년 출동건수는 많아지고 있음.

그런데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·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,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 ·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.

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,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며, 또한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 도가 떨어지고 있음.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·운영토록 하고자 함임 (안 제12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119구조・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2(119항공정비실의 설치·운영 등) ① 소방청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헬기 등을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(이하 "정비실"이라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
  - 2. 중대한 결함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
  - 3.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  - 4.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 운영 · 관리에 관한 사항
  - 5.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
  - 6.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관련 문서·기록의 관리·유지에 관한 사항
  - 7. 그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
  - ③ 정비실의 설치・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정비실의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2조의2(119항공정비실의 설치
	· 운영 등) ① 소방청장은 제12
	조 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구
	조구급대의 소방헬기 등을 전문
	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
	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
	실(이하 "정비실"이라 한다)를
	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	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
	업무를 수행한다.
	1.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
	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
	2. 중대한 결함 및 중정비 업무
	수행 등에 관한 사항
	3.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
	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	4.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
	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	5.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
	유지에 관한 사항
	6.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
	관련 문서·기록의 관리·유
	지에 관한 사항
	7. 그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

## 해 필요한 사항

- ③ 정비실의 설치·운영,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정비실의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